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23년도 정기이사회(2023. 2. 22)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

2023년 2월 27일

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규정 제 110 호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개정규정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중 ‘아라어린이집(이하 “어린이집” 이라 한다)’ 를 삭제한다.

제2조(사업) 중 ‘(지방자치단체)’ 를 ‘(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)’ 으로 하고 ‘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사업지침’ 을 삭제한다.

제3조(시설장 및 직원) 제1항의 ‘어린이집’ 과 ‘각각’ 을 삭제하고,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‘관장과 원장’ 을 ‘관장’ 으로, 제2항의 ‘임기 3년의 계약직’ 을 ‘임기는 3년이며’ 로 하며, 제3항의 ‘보고하고, 어린이집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인사규정에 의한다’ 를 ‘보고하여야 한다’ 로 하고, 제4항의 ‘어린이집’ 을 삭제한다.

제4조(조직)부터 제10조(감사)까지 ‘어린이집’ 과 ‘원장’ 을 삭제한다.

제8조(제규정의 적용)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